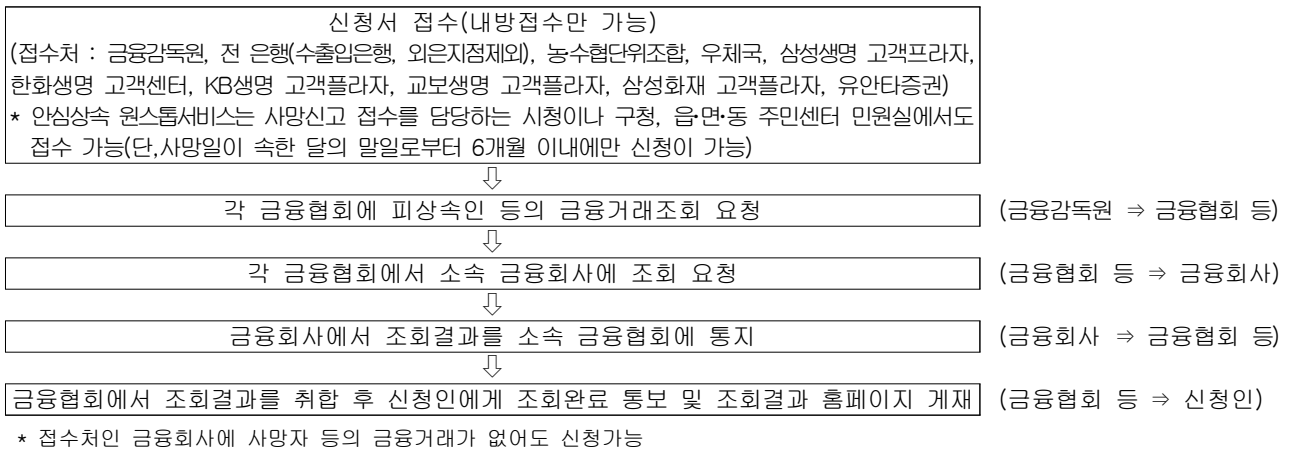


##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

-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(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, 보험계약, 예탁증권, 공제 등), 채무(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, 신용카드 이용대금,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,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)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, 미반환주식,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,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(채납정보 등)\* 및 상호회사 가입여부를 알려드립니다.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. (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)
- \* 일정기간 이상 채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 · 지방세 · 관세 · 과태료 · 고용보험료 · 산재보험료 · 임금의 채납(불), 채무불이행자 결정 사실,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(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·보유)
- \*\* 전국 지자체의 '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'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세(채납·고지세액), 자동차(소유내역), 토지(소유내역)정보 신청 가능,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신청이 가능
- ※ 상호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(또는 지급보증)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이며, 상호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호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(지자체 접수시 피상속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확인 불가)
- ※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,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저축은행 등 파산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유여부는 예금보험공사에 별도 조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-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.(단, 연금 가입여부는 상속인에게만 통지)
-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-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(또는 후견인)이 신청할 수 있으며,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(또는 후견인)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·채무액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,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(사망 후 해지계좌 포함)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셔야 합니다.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에 한해 접수증, 신분증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대리인의 경우 접수증, 신분증 외에 금융사가 요구하는 위임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 이외 필요서류 등은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예금 등의 상속(명의변경 및 지급 등)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.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(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금융협회별로 다름)

※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>)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.

◦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

협회명	홈페이지주소	전화번호	조회가능금융기관	예상소요기간
예금보험공사	<a href="http://www.kdic.or.kr">www.kdic.or.kr</a>	02-758-0114	영업정지 등 보험사고 발생 부보 금융회사	3 ~ 10일
전국은행연합회	<a href="http://www.kfb.or.kr">www.kfb.or.kr</a>	3705-5000	은행, 수협, 농축협	10 ~ 15일
한국신용정보원	<a href="http://www.kcredit.or.kr">www.kcredit.or.kr</a>	1544-1040	신보, 기신보, 주공공 등	10 ~ 15일
생명보험협회	<a href="http://www.klia.or.kr">www.klia.or.kr</a>	02-2262-6600	생명보험	6 ~ 10일
손해보험협회	<a href="http://www.knia.or.kr">www.knia.or.kr</a>	02-3702-8500	손해보험	3 ~ 7일
금융투자협회	<a href="http://www.kofia.or.kr">www.kofia.or.kr</a>	02-2003-9000	금융투자회사	7 ~ 10일
여신금융협회	<a href="http://www.crefia.or.kr">www.crefia.or.kr</a>	02-2011-0700	카드, 리스, 할부금융	15 ~ 20일
저축은행중앙회	<a href="http://www.fsb.or.kr">www.fsb.or.kr</a>	02-397-8600	저축은행	15 ~ 20일
신협중앙회	<a href="http://www.cu.co.kr">www.cu.co.kr</a>	042-720-1000	신용협동조합	10 ~ 15일
새마을금고중앙회	<a href="http://www.kfcc.co.kr">www.kfcc.co.kr</a>	02-2145-9205	새마을금고	10 ~ 15일
산림조합중앙회	<a href="http://banking.nfcf.or.kr">banking.nfcf.or.kr</a>	042-620-0300	산림조합	10 ~ 15일
한국예탁결제원	<a href="http://www.ksd.or.kr">www.ksd.or.kr</a>	02-3774-3000	증권	10 ~ 15일
우체국	<a href="http://www.epostbank.go.kr">www.epostbank.go.kr</a>	02-2195-1376	우체국	7 ~ 10일
한국대부금융협회	<a href="http://www.clfa.or.kr">www.clfa.or.kr</a>	02-3487-5800	대부업체	7 ~ 14일

※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(<http://www.hometax.go.kr>), 국민연금 가입유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nps.or.kr>)에서 확인 가능하고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유무는 해당 기관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제공합니다.

□ 예상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완료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·출금(자동이체포함)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.

□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극히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